



땅 끝 해 남 소 식

2023년 9월 15일(551호)

HAENAM NEWS

◆ **군정목표** ◆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 **군정방침** ◇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활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321팩스 530-5574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고시·조례·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조례

- ◎ 해남군 조례 제3264호 -----2
- ◎ 해남군 조례 제3265호 -----11
- ◎ 해남군 조례 제3266호 -----16
- ◎ 해남군 조례 제3267호 -----24
- ◎ 해남군 조례 제3268호 -----34

고시

- ◎ 해남군 고시 제142호 -----40

조례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6.)에서
의결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64호

붙임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적지”란”을 ““고산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람하계”를 “관람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입장료)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고산유적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2. 매주 월요일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요금표 게시)”를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입장요금, 관람시간”을 “관람시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군청”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 중 “팀장”을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뜻) ----- ----- 각 호----- --.
1. “유적지”란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고산윤선도 박물관(국보 제240호, 보물 제481호~제483호 전시품),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일원을 말한다.	1. “고산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란 ----- ----- ----- -----.
2. “입장료”란 유적지를 관람하게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 관람하기 ----- -----.
3.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4. “청소년·군경”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하사 이하 군인, 의무경찰을 말한다.	<삭 제>
5.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6. “단체”란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입장료 징수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직접	제3조(입장료)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고산유적지 입장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입장권의 서식은 어른, 청소년·군경, 어린이, 단체로 구분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와 같다.

제4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65세 이상인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의 상이(장해)등급이 1~3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료는 무료로 한다.

<삭 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및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활동보조자 1명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1.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라 발급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당해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내, 1회에 한함)

12.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명예군민증 수여자

13.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14. 해남군민

1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2세 이하인 사람

16.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7.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개관) ① 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관람토록 하고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매주 월요일(7월과 8월은 제외)

제5조(개관) ① -----

-----.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 일

② (생략)

제6조(입장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7조(요금표 게시) 입장요금, 관람시간,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구입) ① (생략)

② 구입 예정 유물은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시군구와 문화재청을 비롯한 군청 및 박물관 홈페이지에 5~10일간 공개하여 도난, 도굴,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3. -----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입장거부 또는 퇴장) -----
----- 각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준수사항) 관람시간-----

-----.

제10조(유물구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

-----.

제18조(간사) -----
----- 공무원-----.

【별표 1】 < 현 행 >

입장요금표(제3조제2항 관련)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어른	2,000	1,500	- 19세이상 64세이하
청소년, 군경	1,500	1,000	- 13세이상 18세이하 - 하사이하 군인 및 의무경찰
어린이	1,000	500	- 5세이상 12세이하

※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한다.(1회 총 결제금액 기준)
단, 환급액이 천 원 미만인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 단체는 20명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함.

※ 단체관람 인솔교사 면제기준: 유치원생 유료 관람인원 10명당 1명의 인솔교사

초중고등학생 유료 관람인원 20명당 1명의 인솔교사

※ 나이 계산기준: 관람년도-출생년도

< 개정안 > 삭제

[별지] < 현 행 >

(별지 1호 서식)

입 장 권 원 부 No.	영 수 증 No.	
어 른 2,000원 문화예술과	어 른 2,000원 문화예술과	유적지 경관 사진

< 개정안 > 삭제

[별지] < 현 행 >

(별지 2호 서식)

입 장 권 원 부 No.	영 수 증 No.	
청 소 년 · 군 경 1,500원 문화예술과	청 소 년 · 군 경 1,500원 문화예술과	유적지 경관 사진

< 개정안 > 삭제

[별지] < 현 행 >

(별지 3호 서식)

입 장 권 원 부 No. 어린이 1,000원 문화예술과	영 수 증 No. 어린이 1,000원 문화예술과	유적지 경관 사진
--	--	-----------

< 개정안 > 삭제

[별지] < 현 행 >

(별지 4호 서식)

단체입장권 원부 NO.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인 원</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r> <tr> <td>금 액</td> <td></td> <td></td> </tr> <tr> <td>단체명</td> <td></td> <td></td> </tr> </table> 어른 1,500원, 청소년·군경 1,000원, 어린이 500원 문화예술과	인 원			금 액			단체명			단 체 입 장 권 NO.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인 원</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r> <tr> <td>금 액</td> <td></td> <td></td> </tr> <tr> <td>단체명</td> <td></td> <td></td> </tr> </table> 어른 1,500원, 청소년·군경 1,000원, 어린이 500원 문화예술과	인 원			금 액			단체명			유적지 경관 사진
인 원																				
금 액																				
단체명																				
인 원																				
금 액																				
단체명																				

< 개정안 > 삭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6.)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65호

붙임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에 따라”를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2”를 “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34조제3항에 따른 ----- ----- -----.</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해남군수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p>

[별표](**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표](**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6.)에서
의결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66호

붙임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조례 제3266호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남군(이하“군””을 “해남군(이하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맛집”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소장, 유통지원과장”을 “유통지원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팀장”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대표음식점의 지정 등)”을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표음식점”을 “대표음식점과 맛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표음식점”을 “대표음식점, 맛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표 음식점으로”를 “대표음식점과 맛집의”로, “해남군”을 “군”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표음식점, 맛집을 지정한다.

제16조 중 “대표음식점”을 “대표음식점과 맛집”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음식점”을 “대표음식점, 맛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대표음식”이란 <u>해남군</u> (이하 “<u>군</u>”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p> <p>2. (생략)</p> <p><u><신 설></u></p> <p>3. ~ 5. (생략)</p> <p>제6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p>	<p>제2조(정의) ----- -----.</p> <p>1. ----- <u>해남군</u>(이하 “<u>군</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u>맛집</u>”이란 「<u>식품위생법 시행령</u>」 제21조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u>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u></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제6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보건소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생략)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② (생략)

제15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대표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표음식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한다.

② 군수는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대표음식점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3. (생략)

③ 대표음식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득

----- 유통지원과장, 보건소장-----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① -----
----- 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표음식점, 맛집을 지정한다.

② -----

-----.

1. 대표음식점과 맛집 -----

2. 3. (현행과 같음)

③ 대표음식점, 맛집-----
-----.

④ 대표음식점과 맛집의 -----

한 음식점에서의 사용 재료는 해남군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군-----
-----.

제16조(영업주 등의 교육) 군수는 대표음식점의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대표음식 조리,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영업주 등의 교육) ----
대표음식점과 맛집-----

-----.

제23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육성지원 등) -----
--- 대표음식점, 맛집-----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대표음식점 지정 신청서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음식명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표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대표음식점 지정증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영 업 형 태		전화번호	
소 재 지			
음 식 의 유형			
<p style="text-align: center;">위 업소를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 남 군 수 인</p>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6.)에서
의결된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67호

붙임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조례 제3267호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으로, “적극적인 조치를”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로,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를 “구현하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이란 헌법”을 “이란 「대한민국헌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한다.

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1항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법 제6조를 말한다.
5.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수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군민”을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제7조제2항제5호 중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차별금지, 인권보장 및 범죄 예방·대응”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장애인차별”을 “장애인차별 및 학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리구제”를 “권리구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 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를 “군”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경찰서,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 ----- -----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 --- 구현하기 ----- ----- -----.</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① ----- ----- 뜻은 ----- --.</p>
<p>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p> <p>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p>	<p>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을 말한다.</p> <p>2.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1항을 말한다.</p> <p>3. “장애인 차별금지”란 법 제6조를 말한다.</p>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 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이란 「대한민국헌법」-----

-----.

5.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② -----
----- 법-----

-----.

제3조(군수의 책무) -----

-----.

- 1. ~ 3. (생략)
- 4.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관할 내의 소속기관 직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및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 ① (생략)
-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군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생략)
- <신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 4. 군수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 ① (현행과 같음)
- ② -----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
-
-
- ③ (현행과 같음)
- ④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9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차별금지, 인권보장 및 범죄예방·대응-----

제9조(지원사업) -----

-----.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 6. (생략)

<신설>

7. (생략)

제10조(교육실시)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교육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 4. (생략)

<신설>

5. (생략)

④ (생략)

제11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

1. 장애인차별 및 학대 -----

2. ~ 6. (현행과 같음)

7.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사업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0조(교육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법 -----

2.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홍보) -----

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삽입 및 운영

2. (생략)

<신설>

----- 권리구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

-----.

1. -----
----- 군 -----

2. (현행과 같음)

제1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경찰서,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6.)에서
의결된 해남군 국가 암 유소전자 추가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68호

붙임 해남군 국가 암 유소전자 추가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해남군 조례 제3268호

해남군 국가 암 유소건자 추가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암 검진 결과 암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건자에게 추가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 조기 발견 및 해남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암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암 유소건자”란 국가 암 검진자 중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2 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대장암 및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암 검진자 중 암 유소건자 추가 검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치료율을 높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및 내용) 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 암 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건자에게 추가 검사에 필요한 비급여 검사비용을 연간 6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가 검사 실시 다음 달 10일까지 해남군보건소에 제출한다.

1. 국가 암검진 결과서(암유소견 판정) 원본
 2. 추가 검사 영수증 및 추가 검사 증빙서류(세부산정영수증 등 추가 검사 확인내역)
 3. 대상자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4.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치료 및 사후관리) ①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가 암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암 진단자에 대하여는 재가암환자 자조(自助) 모임 및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암종별	검진대상	검진주기	지원내용	지원금액(최대)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여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음)	1년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등	60,000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2년	유방초음파비	60,000

고 시

해남군 고시 2023 - 142호

해남 옥천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26호(2023.05.04.)로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된 옥천농공단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고시 승인 고시합니다.

2023. 9. 7.

해 남 군 수

1.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다음
2.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계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경제산업과(☎061-530-5677) 및 건설도시과(☎061-530-54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1,000	증) 5,270.7	106,270.7	100.0	
계획관리지역	101,000	증) 5,270.7	106,270.7	100.0	면적오차정정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옥천면 영신리 606 일원	계획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06,270.7	150	· 면적오차 정정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옥천 농공단지	산업개발 진흥지구	옥천면 영신리 606번지 일원	-	101,000	건고-790 (1989.12.26.)	
변경	3	옥천 농공단지	산업개발 진흥지구	옥천면 영신리 606번지 일원	-	106,270.7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3	옥천농공단지	· 면적변경 - A : 101,000㎡ → 106,270.7㎡ 증) 5,270.7㎡	· 면적오차 정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6	옥천 농공단지	옥천면 영신리 606번지 일원	101,000	증) 5,270.7	106,270.7	건고-790 (1989.12.2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6	옥천 농공단지	· 면적변경 - A : 101,000m ² → 106,270.7m ² 증) 5,270.7m ²	· 면적오차 정정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	증) 106,270.7	106,270.7	100.0	
산업 시설 용지	소계	-	증) 83,927.9	83,927.9	78.9	
	산업시설용지	-	증) 83,927.9	83,927.9	78.9	
지원 시설 용지	소계	-	증) 2,076.5	2,076.5	2.0	
	관리사무소	-	증) 2,076.5	2,076.5	2.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	증) 20,266.3	20,266.3	19.1	
	도로	-	증) 12,540.9	12,540.9	11.8	관습로 (1,523.8m ²) 포함
	녹지	-	증) 7,725.4	7,725.4	7.3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면적 (㎡)	노선 수	연장	면적 (㎡)	노선 수	연장	면적 (㎡)	노선 수	연장	면적 (㎡)
합계	기정	-	-	-	-	-	-	-	-	-	-	-
	변경	3	810	11,017.1	-	-	-	2	215	1,894.0	1	595
중로	기정	-	-	-	-	-	-	-	-	-	-	-
	변경	1	595	9,123.1	-	-	-	-	-	-	1	595
소로	기정	-	-	-	-	-	-	-	-	-	-	-
	변경	2	215	1,894.0	-	-	-	2	215	1,894.0	-	-

※ 관습로(영신리 607도, 1,523.8㎡) 제외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	12~16	국지 도로	595	영신리 98-3번지	소로2-2	일반 도로			옥천 농공단지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86	중로3-1	영신리 604-1번지	일반 도로			옥천 농공단지
신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129	영신리 605-3번지	영신리 605-1번지	일반 도로			옥천 농공단지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1	○ 노선 신설 - L : 595m - B : 12~16m	○ 조성완료된 농공단지내 현황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로로 결정
-	소로2-1	○ 노선 신설 - L : 86m - B : 8m	○ 조성완료된 농공단지내 현황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로로 결정
-	소로2-2	○ 노선 신설 - L : 129m - B : 8m	○ 조성완료된 농공단지내 현황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로로 결정

(2)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옥천면 영신리 608입	-	-	4,116.0		옥천 농공 단지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옥천면 영신리 609입	-	-	3,609.4		옥천 농공 단지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 신설 - A : 4,116.0㎡	○ 조성완료된 농공단지내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완충녹지로 결정
2	완충녹지	○ 신설 - A : 3,609.4㎡	○ 조성완료된 농공단지내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완충녹지로 결정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06,270.7		
-	A	83,927.9	-1	옥천면 영신리 604장 일원	3,022.7	산업시설용지
			-2	옥천면 영신리 604-1장 일원	1,979.9	
			-3	옥천면 영신리 604-9장 일원	1,414.9	
			-4	옥천면 영신리 604-2장 일원	6,849.3	
			-5	옥천면 영신리 604-10장 일원	2,987.8	
			-6	옥천면 영신리 604-11장 일원	219.3	
			-7	옥천면 영신리 604-3장 일원	4,549.8	
			-8	옥천면 영신리 604-4장 일원	3,563.7	
			-9	옥천면 영신리 604-7장 일원	2,521.0	
			-10	옥천면 영신리 604-5장 일원	5,905.3	
			-11	옥천면 영신리 604-8장 일원	1,111.4	
			-12	옥천면 영신리 604-12장 일원	1,663.6	
			-13	옥천면 영신리 604-6장 일원	2,763.8	
			-14	옥천면 영신리 605장 일원	3,625.4	
			-15	옥천면 영신리 605-1장 일원	5,797.8	
			-16	옥천면 영신리 605-2장 일원	5,703.9	
			-17	옥천면 영신리 605-3장 일원	5,796.1	
			-18	옥천면 영신리 606-2장 일원	5,119.2	
			-19	옥천면 영신리 606-7장 일원	3,305.0	
			-20	옥천면 영신리 606-5장 일원	4,604.2	
			-21	옥천면 영신리 606장 일원	5,204.3	
			-22	옥천면 영신리 606-1장 일원	4,833.4	
			-23	옥천면 영신리 606-4장 일원	1,386.1	
	B	2,076.5	-1	옥천면 영신리 606-3장 일원	2,076.5	지원시설용지
	C	20,266.3	-	옥천면 영신리 610도 일원	11,017.1	공공시설용지(도로)
			-	옥천면 영신리 607도 일원	1,523.8	공공시설용지(관습로)
			-	옥천면 영신리 608임 일원	4,116.0	공공시설용지(녹지)
			-	옥천면 영신리 609임 일원	3,609.4	공공시설용지(녹지)

※ 산업용지의 필지(지적) 분할 및 합병에 의한 개발은 최소필지규모 계획 이상으로 함

(2) 최소필지규모 계획

도면표시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A, B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의거,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최소 분할 면적을 900㎡ 이상으로 하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A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중 다음의 시설, 단 환경오염우려 업체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 벽면은 접한 가로 방향과 가급적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가급적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	
		색채	· 주조색(70-80%) 무채색계열 권장, 보조색(10-20%) 그린·레드 색채계열 권장, 강조색(10%) 건축물 지붕에 대해서 블루·그린 색채계열 권장	

(2) 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B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12호 [별표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공단지 지정권자가 결정한 다음의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에 한한다)
			불허용도	· 허용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 벽면은 접한 가로 방향과 가급적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가급적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	
		색채	· 주조색(70-80%) 무채색계열 권장, 보조색(10-20%) 그린·레드 색채계열 권장, 강조색(10%) 건축물 지붕에 대해서 블루·그린 색채계열 권장	